



지구총재, 제1 및 제2 지구부총재 선거항의 절차

다음의 규정은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선거 부정과 관련된 헌장상의 항의 청문회 때 적용시킨다:

진정서 배포 지침: 항의자 측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 멤버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를 국제본부 법률부로 전달해야 한다. 항의자 측은 각 이사 혹은 집행 임원들에게 직접 문서를 배포할 수 없다.

A. 항의자

1.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선거에서 지구총재/지구부총재직 선거에 실패한 후보자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패한 후보자의 항의서에는 반드시 후보자 소속 클럽이 항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동봉해야 한다. 또는 지구 내 굳스탠 클럽 과반수가 항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항의서에는 반드시 해당 지구 내 각 클럽이 항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동봉해야 한다.
2. 항의 이유를 설명한 최초의 항의 통지서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팩스, e-메일 혹은 다른 서면으로 국제본부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항의 서류는 E 항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최초의 항의 통지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3. E 항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4. 지구총재 선출에 대한 항의는 수수료로 \$1,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첨부해야 한다. 국제이사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항의가 취소되는 경우 \$200 를 사무 수수료로 국제협회에 보유하고 \$40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400 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350 를 사무 수수료로 국제본부에 보유하고 \$65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를 기각할 경우 항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5. 지구 제 1 및 제 2 부총재 선출에 대한 항의는 수수료로 \$1,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첨부해야 한다. 국제이사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되기 전에 항의를 취소되는 경우 \$200 를 사무 수수료로 국제협회에 보유하고 \$40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400 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350 를 사무 수수료로 국제본부에 보유하고 \$65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를 기각할 경우 항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6. 항의자는 항의문과 기타 보조서류를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의사 소통 방법으로 항의 대상자에게 제출한다. 이 같은 항의문을 접수하는 즉시, 법률부는 적절할 경우 항의문

사본을 상대방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라도 이 같은 제공은 항의자 측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항의문을 상대 측에 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은 항의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의자는 불순종 혹은 근거 없음이라는 기각을 초래할 것이다.

B. 답변

1. 항의에 대한 응답은 답변자만 할 수 있으며 E 항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야 요청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 국제본부 법률부가 승인한 기간 내에 발송해야 한다. 단, 법률부 부장이 현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하에 정당한 이유로 관련 응답을 팩스로 발송하도록 하거나 접수일을 5 일 더 연장해줄 수 있다.
2. 응답은 선거가 실시된 대회 공식 회의록 사본, 적용할 수 있는 지구 헌장 및 부칙 및 대회 선거규정 및/혹은 투표 조건에 대한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회의록은 지구대회 선거절차와 투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하며, 지구총재와 지구 집행이사에 의해 그 정확성을 증명 받은 것이어야 한다. 법률부는 항의에 대한 응답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서류는 요청한 날짜로부터 10 일 이내에 법률부가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응답과 기타 보조서류는 응답하는 측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항의자 측에 대한 동일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응답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부는 적합할 경우 응답내용의 사본을 다른 당사자측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라도 이 같은 제공은 항의자 측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답변을 전달하였다는 증명을 답변 제출과 함께 항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같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의자는 불순종 혹은 근거 없음이라는 기각을 초래할 것이다.

C. 응답에 대한 회신

1. 항의자는 응답을 접수한 지 5 일(주말을 제외한) 이내 국제본부로 회신하도록 한다. 응답은 E 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5 페이지만 허용한다. 그 외 서류는 허용하지 않는다. 회신은 문제가 제시되었을 경우, 제시된 문제를 언급하고 항의문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2. 회신내용은 항의자 측에 의해 그리고 동시에 항의 대상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같은 회신 내용을 접수하는 대로, 법률부는 가능하다면 회신 내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라도 이 같은 제공은 항의자 측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항의 대상자 측에 응답을 전달하였다는 증명은 회신 제출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근거 없음이라는 기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D. 항의자 외로부터의 응답

법률부는 항의관계자 외 제삼자로부터의 응답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이를 반송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E. 항의문, 응답 및 회신형식

1. 항의문 원본은 다음 내용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a)항의 이유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확하고도 공정한 사실에 대한 진술, (b)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논쟁 및 그에 대한 이유, (c)필요한 조치를 설명한 간결한 결론.
2. 부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는 12포인트 활자 또는 더 큰 활자(파이카 활자체로 타이프 할 경우 자간은 10피치)로 작성하도록 한다. 각주는 9포인트 활자 또는 더 큰 활자(엘리트 활자체로 타이프 할 경우 자간은 12피치)로 작성한다. 서류를 축소 복사하거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자간을 축소해서는 안된다. 복사기로 축소한 문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발송자에게 반송처리한다. 모든 문서는 8.5 X 11인치의 불투명지나 A/4지를 사용하여 사방 3/4인치의 여백을 두고 더블 스페이스로 타자하며, 좌측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로 고정시키거나 철한 것이어야 한다. 문서는 배면을 사용하지 않고 한 면만 사용한다.
3. 임의의 보충서류 5페이지와 더불어, 제출된 항의문 및 응답은 1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응답에 대한 회신은 5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이외의 서류는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0페이지 중 1페이지, 10페이지 중 2페이지.) 페이지 수 증가 요청 혹은 추가의 보충서류를 제공하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페이지 제한과는 별도로 표지 1장에다 (a)지구, (b)항의자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팩스번호, (c) 항의 대상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팩스번호, (d)선거일 및, (e)득표수를 포함한 선거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4. 제출된 서류의 끝부분에 서류 제출자 측의 친필 서명이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 바로 아래 기재되어야 한다: “본인은 국제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 것임에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의 각 페이지마다 제출자가 약식 서명을 하도록 한다. 추가로, 항의가 전자파일로 제출된 경우, 항의자는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류가 원본과 일치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5. 법률부는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검토하지 않으며 규정 미달 사유와 함께 이를 제출자에게 반송한다. 그러나 적절한 서류가 즉시 접수될 경우에는 본 서류가 적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이사회는, 헌장 및 부칙위원회를 통해, 본 규정에 준하지 않고 다시 제출된 서류검토를 거절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에 상기 절차와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고 제출된 항의문, 항의문에 대한 응답 혹은 응답에 대한 회신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서는 안된다. 항의문, 응답 혹은 회신을 제출함으로써, 항의 당사자들은 국제이사회의 심사를 받고 나아가 국제이사회의 모든 결정에 따른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국제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F. 당선-총재 세미나

지구총재 선거 항의에 관련된 당사자는 국제이사회가 선거결과가 유효하다고 승인할 때까지 혹은 차기 국제회장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당선-총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다. 각 지구(단일, 정 혹은 복합지구)는 항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들이 차기 회계연도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지구수준의 연수에 참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